

제 호

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 :
2. 대 표 자 :
3. 소 재 지 :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교육감

직인

[illegible]